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42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TV·냉장고의 KS 표준 개정반영 등 사전검토 추가소요* 및 전기냉난방 기기 통합정비**에 따른 중장기목표 시행일 조정
 - * 소비전력량 측정방법 변경에 따른 연구용역 추진, 의견수렴, 효율 재측정 등
 - ** 냉방기·냉난방기-EHP를 냉방기·냉난방기로 통합하여 효율적 운영·관리 도모
- 現 효율관리기자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문 정비
 - * 펌프대상 출장시험 근거조항, 측정항목 변경, 법령명 현행화 등

2. 주요 내용

① 중장기 목표 소비효율기준 시행일자 조정(별표1)

- (텔레비전수상기) KS표준 소비효율측정방법 변경에 따른 효율등급 기준 재설정 및 대형화면·고화질 모델 보급증가로 적용범위 확대
- (전기냉장고) KS표준 소비효율측정방법 변경 예정에 따른 효율등급 기준 재설정 및 신고모델 재시험 소요기간 등 반영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기(냉방기·냉난방기·EHP) 통합정비, 소비 효율 기술기준 마련 및 중장기 목표시기 일원화 반영

* 냉방기·냉난방기·EHP→냉방기(싱글형·멀티형)·냉난방기(싱글형·멀티형), 측정방법·지표 정비

② 펌프의 출장시험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안 제9조)

- 효율관리기자재 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발급시 펌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출장 시험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 신설

③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의 측정항목 변경(안 제10조, 별표1)

- ‘역률’을 측정항목 및 시험성적서 기재 항목에서 삭제

④ 창세트, 멀티EHP 시스템의 시리즈 단위신고 허용조항 삭제(안 제3조)

- 모델별 신고가 원칙이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된 ‘11년부터 시리즈 단위별 신고허용, 다만 신고실적은 전무

* 다른 효율관리기자재와 동일하게 모델별 신고 가능

⑤ 타 법령 등 규정 현행화(안 제4조, 제18조, 별표1)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변경
- ‘전기용품안전인증의 표시에 관한 규정, 전기용품안전기준 운용요령’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으로 변경

3. 의견제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효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5146,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2825lwj@korea.kr

<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조(용어정의) 1~5 (생략) 6. 모델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설계,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하며, 그 고유 명칭으로 발급된 측정결과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 단, 창 세트,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경우 모델 시리즈 단위로 신고하여도 좋다.	제3조(용어정의) 1~5. (현행과 같음) 6. 모델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설계,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하며, 그 고유 명칭으로 발급된 측정결과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 <삭 제>	○ 사문화된 조항 삭제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① (생략) 1 ~ 26. (생략) 27. 전기온풍기: 「 <u>전기용품안전 관리법</u> 」 시행규칙의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중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온풍기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난방효율 및 소비전력 28. 전기스토브: 「 <u>전기용품안전 관리법</u> 」 시행규칙의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중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스토브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대기전력 및 소비전력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6. (현행과 같음) 27. 전기온풍기: 「 <u>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u> 」 시행규칙의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중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온풍기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난방효율 및 소비전력 28. 전기스토브: 「 <u>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u> 」 시행규칙의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스토브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대기전력 및 소비전력	○ 관계법령명 개정에 따른 조항 재정비
제9조(시험성적서 발급) ①~③ (생략) ④ 효율관리시험기관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해외출장 시험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냉동기 <신 설> 는 국내 출장 시험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시험성적서 발급) ①~③ (현행과 동일) ④ 효율관리시험기관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해외출장 시험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냉동기, 펌프 는 국내 출장 시험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 펌프의 국내 출장 시험을 위한 근거 마련
제10조(시험성적서 기재항목) ① (생략) 1.~46. (생략) 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광효율,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역률 , 광원색, 연색성(Ra), 초기광속, 1시간 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 ₂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제10조(시험성적서 기재항목) ① (현행과 동일) 1.~46. (현행과 동일) 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광효율,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삭 제>, 광원색, 연색성(Ra), 초기광속, 1시간 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CO ₂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 직관형LED 램프(컨버터 외장형) 성적서 기재항목 수정
제18조(사후관리 등) ①~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 <u>전기용품안전관리법</u> 」 등 다른 법령에	제18조(사후관리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 <u>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u> 」	○ 관계법령명 개정에 따른 조항 재정비

현행	개정(안)	비고
의한 사후관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후관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부칙(1992.8.17.)~부칙(2024.1.2.) (생략) <신설>	부칙(1992.8.17.)~부칙(2024.1.2.) (현행과 동일) 부칙(제2024-00호, 2024.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1. 전기냉장고 (생략) 4.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현행					개정(안)					비고						
구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0월 1일부터		구분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일체형		4.46 ≤ R	3.27 ≤ R	4.59 ≤ R	3.36 ≤ R	일체형		4.46 ≤ R	3.27 ≤ R	4.59 ≤ R	3.36 ≤ R					
냉방능력 단위 kW	정격냉방능력 4kW미만	7.11 ≤ R	6.04 ≤ R	7.31 ≤ R	6.17 ≤ R	냉방능력 단위 kW	정격냉방능력 4kW미만	7.11 ≤ R	6.04 ≤ R	7.31 ≤ R	6.17 ≤ R					
	정격냉방능력 4kW이상	7.21 ≤ R	5.30 ≤ R	7.43 ≤ R	5.43 ≤ R		냉방능력 단위 kW	정격냉방능력 4kW이상	7.21 ≤ R	5.30 ≤ R	7.43 ≤ R	5.43 ≤ R				
	10kW미만							냉방능력 단위 kW	10kW미만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	6.49 ≤ R	4.83 ≤ R	6.68 ≤ R	4.96 ≤ R				냉방능력 단위 kW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	6.49 ≤ R	4.83 ≤ R	6.68 ≤ R	4.96 ≤ R		
	17.5kW미만									냉방능력 단위 kW	17.5kW미만					
	정격냉방능력 17.5kW이상	4.66 ≤ R	2.98 ≤ R	4.79 ≤ R	3.06 ≤ R						냉방능력 단위 kW	정격냉방능력 17.5kW이상	4.66 ≤ R	2.98 ≤ R	4.79 ≤ R	3.06 ≤ R
23kW미만					냉방능력 단위 kW	23kW미만										
10. 전기밥솥 (생략)						10. 전기밥솥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명 개정에 따른 조항 재정비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생략) <u>기술표준원고시 전기용품안전인증의 표시에 관한 규정</u> <u>기술표준원고시 전기용품안전기준 운용요령</u>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현행과 같음) <u><삭 제></u> <u>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u>										
26. 텔레비전수상기 (생략)						26. 텔레비전수상기 (현행과 같음)						○ 중장기 목표 소비효율기 준의 시행 일자 변경				
8.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m ²)						8.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단위 : W/√m ²)										
구분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월 1일부터		구분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7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수직해상도 2,160 미만		66 ≥ R	232 ≥ R	64 ≥ R	225 ≥ R	수직해상도 2,160 미만		66 ≥ R	232 ≥ R	64 ≥ R	225 ≥ R					
수직해상도 2,160 이상 4,320 미만		73 ≥ R	232 ≥ R	71 ≥ R	225 ≥ R	수직해상도 2,160 이상 4,320 미만		73 ≥ R	232 ≥ R	71 ≥ R	225 ≥ R					
27. 전기온풍기 1. 적용범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의						27. 전기온풍기 1. 적용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						○ 관계법령명 개정에 따른 조항 재정비				

현행	개정(안)	비고
합계가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온풍기에 한한다. (생략)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생략)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KS C IEC 60675, KS C 9306을 따른다.	격소비전력의 합계가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온풍기에 한한다. (현행과 같음)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현행과 같음)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S C IEC 60675, KS C 9306을 따른다.	
28. 전기스토브 1. 적용범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스토브에 한한다. (생략)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생략)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KS C IEC 60675, KS C 9306을 따른다.	28. 전기스토브 1. 적용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스토브에 한한다. (현행과 같음)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현행과 같음)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S C IEC 60675, KS C 9306을 따른다.	○ 관계법령명 개정에 따른 조항 재정비
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생략) 4.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 비용	47.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현행과 같음) 4. 소비효율 측정항목, 에너지 비용	○ 직관형LED 램프(컨버터외장형) 측정항목 수정

현행					개정(안)					비고			
구분	종 시 료 개 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 ₂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 격 허용 개수	구분	종 시 료 개 수	측정항목	측정기준 및 CO ₂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환산기준	불합 격 허용 개수				
직관형 LED 램프 (컨버터 외장형)	2	최소 광속 광효율 및 램프전력 및 램프 전류 역률 광원색	2,300lm 이상 - 표시치의 ±10% 이내 22W 이하 0.90 이상일 것 색온도 범위에 적합	0	직관형 LED 램프 (컨버터 외장형)	2	최소 광속 광효율 및 램프전력 및 램프 전류 램프 전력 <삭 제> 광원색	2,300lm 이상 - 표시치의 ±10% 이내 22W 이하 <삭 제> 색온도 범위에 적합	0				
			색온도(K)					색온도범위 (K)				색온도(K)	색온도범위 (K)
			6500					7040~6020				6500	7040~6020
			5700					6020~5310				5700	6020~5310
			5000					5311~4745				5000	5311~4745
			4500					4746~4260				4500	4746~4260
			4000					4260~3710				4000	4260~3710
			3500					3710~3220				3500	3710~3220
			3000					3220~2870				3000	3220~2870
			2700					2870~2580				2700	2870~2580
		연색성(Ra) 초기광속 1시간소비전력 량 1시간사용시 CO ₂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80이상일 것 정격광속의 95% 이상 입력전력(W)×1시간(h) 1시간소비 전력량(Wh)× 0.425 -				연색성(Ra) 초기광속 1시간소비전력 량 1시간사용시 CO ₂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80이상일 것 정격광속의 95% 이상 입력전력(W)×1시간(h) 1시간소비 전력량(Wh)× 0.425 -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비고) 1. 측정항목의 단위 및 환산기준은 [별표 1의 2] (측정항목의 단위, 환산기준 등)을 적용한다.								